

## 2024년 하반기 부산시설공단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경쟁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2024년 하반기 부산시설공단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경쟁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17일

### 1. 최종 합격자(접수번호 순)

가. 행정

행정-04 행정-06 행정-11 행정-28 행정-44 행정-49

나. 장래

합격자 없음

다. 전기

전기-06 전기-08

라. 기계

기계-01 기계-03

마. 토목

토목-05

### 2. 예비합격자(예비합격 순)

가. 행정

(예비합격자 1번)행정-47 (예비합격자 2번)행정-24 (예비합격자 3번)행정-20

나. 장래

예비합격자 없음

다. 전기

(예비합격자 1번)전기-02 (예비합격자 2번)전기-04 (예비합격자 3번)전기-05

라. 기계

예비합격자 없음

마. 토목

(예비합격자 1번)토목-02 (예비합격자 2번)토목-01 (예비합격자 3번)토목-03

### 3. 최종 합격자 등록

가. 등록기간: 2024. 10. 18.(금) ~ 10. 23.(수) 18:00까지 [평일 4일간]

※ 등록기간 내 합격자 미등록 시 최종합격이 취소됩니다.

나. 등록장소: 부산시설공단 본사 ▷ 주소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74(연지동)

다. 제출방법: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·등록

라. 제출서류 ▷ **최종합격자 발표공고일 이후 발행분(주민등록번호 전부 노출)**

-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통(재학증명서 포함)
- ②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(주소변동이력 포함)
- 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통
- ④ 주민등록등본 2통
- ⑤ 사진(3×4, 상반신 탈모) 5매
- ⑥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1통 [\[붙임파일참조\]](#)  
※ 예시내용을 지운 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해당사항 없음'을 기재하여 제출  
※ 재직 중인 친인척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⑦ 부산시설공단 신규임용자 서약서 1통 [\[붙임파일참조\]](#)
- ⑧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통 [\[붙임파일참조\]](#)
- ⑨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[\[붙임파일참조\]](#)
- ⑩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(해당자에 한함)
- ⑪ 장애인증명서 또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통(해당자에 한함)
- ⑫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중 1통(다문화가족 해당자에 한함)
- ⑬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[\[붙임파일참조\]](#)

## 4. 합격자 준수사항

- 가. 최종합격자 등록 시 합격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.
- 나.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2024. 10. 28.(월) 임용됩니다.
- 다. 합격자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,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.
- 라.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, 미충족 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.
- 마. 채용관련 인사 청탁 등 채용비리 또는 기타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되며, 향후 5년간 부산시설공단 채용 지원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바. 기타 문의 사항은 인재경영팀(☎051-860-7668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## 5. 예비합격자 안내사항

- 가. 예비합격 유효기간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인턴 근무기간 종료일까지
  - ※ 유효기간 내 임용되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나. 예비합격자의 임용사유
  - 임용포기, 자진 퇴사 등에 따른 대응방안 확보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
- 다. 예비합격자 임용 발표방법: 유선통보(입사지원서에 등록된 연락처)
  - ※ 예비합격 대상자의 등록된 휴대전화 연락처로 3회 연락에도 연락불가 시 임용포기로 간주
  - ※ 예비합격자 임용 발표 시 051-860-7668로 연락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유의사항
  - 예비합격자의 지위는 유효기간 내에만 유효합니다.
  - 예비합격 유효기간 내 연락이 가지 않을 시 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합격 처리됩니다.
  - 연락 불가에 따른 책임은 예비합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## 6. 공단 임용 결격사유

### ■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「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사람
7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
9.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
10.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